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97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정이유

-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기업유치 지원사항 등 집약 조례로 통·폐합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가속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안 제4조)
 - 국내·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나.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조항(안 제7조~제11조)
 - 시설투자비(제7조), 고용보조금(제8조), 교육훈련비(제9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제11조)
- 다. 관내 기업 지원 근거(안 제15조~제25조)
 - 공사·물품·용역, 공모사업의 경우 법령 범위 내 가점 부여(제15조)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주택확보 노력 근거(제20조)
 - 우수기업 선정·예우·지원사항 신설(제21조~제23조)
 - 창업 촉진 위한 지원 조항 신설(제25조)
- 라. 기업 투자유치·지원 위원회(안 제26조~제32조)
 - ‘기업유치·지원위원회’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 마. 기업유치센터 설치 근거 신설(안 제35조)
 -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업유치센터 설치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23. 6. 6. ~ 2023. 6. 26. [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반영

9. 참고사항 : 덧붙임

-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시·군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

10. 관련부서 : 해당없음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관내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투자비”란 토지매입비와 시장이 정하는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며 등록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유망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투자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치 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쳐야 하며, 공모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증설을 포함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6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관내 투자비가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가. 미래 성장성이 높고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

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산업에 속한 투자유치 장려기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기업

제5조(기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유치와 활동 등에 필요한 제도와 규정, 인력 등 경영자원, 사업 연관 환경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용역 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 등을 건설하는 등의 시설투자비(건축비, 인테리어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

한 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비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훈련개발시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방세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및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 시장은 투자기업 중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투자기업 관련 민원 처리의 특례) ① 시장은 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민원은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일괄처리 시 중복 처리 방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의 지원 및 육성

제14조(적용대상)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기술 개발지원, 판로 지원, 전통공예 산업 지원, 환경개선 등의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장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관내기업 지원 촉진)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및 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기

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신기술 개발지원)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인증 획득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판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전통공예 산업지원) 시장은 전통공예산업(전통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디자인, 신제품 개발, 제작하는 산업을 말한다)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업 또는 우수 공예인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개선 등의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2. 공동입간판, 공장등록패 설치 등 기업환경에 대한 사항
3. 기업 애로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등

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을 위한 관내 주택확보에 힘써야 한다.

제21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1. 시·도 또는 정부, 기업지원 관련 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증대, 노사협력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게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부여
2.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자격 가점 부여
3.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한다)

4.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5. 그 밖에 우수기업 기업 활동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3조(지원 및 예우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
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
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

장이 정한다.

제4장 기업 투자유치·지원 위원회 및 투자유치단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

1. 기업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유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기업관련 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 선정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 투자유치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제,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기업,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3. 하남시의회 의원
4. 기업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
5. 예산업무 담당과장
6.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28조(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투자유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투자유치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기업유치센터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를 효율적 추진하고 도모하기 위해 기업유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치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투자유치 등의 사업을 중단·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투자유치단 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임명된 투자유치단의 위원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3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 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하여 우수기업 증빙자료를 소지(부착)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부서명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팀장 직위·성명	기업투자유치팀장 김지훈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선영 (5182-1442)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의 지원대상 기업(국내·외 투자기업)에 해당하고 제6조 ~ 제9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조항	지원항목	지원금액한도	최대수혜 전제조건	분석기준	연간소요예산
				합계	최대 20억원
제7조	시설투자비	최대2억원	시설투자비 60억원	연간 5개 기업 유치 시	10억원
제8조	고용보조금	최대1억원	신규고용유발 33명		5억원
제9조	교육훈련비	최대1억원	교육훈련실시 33명		5억원

- 연간 5개 기업 유치를 전제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최대 지원 금액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2,000	2,000	2,000	2,000	2,000

- 다. 재원조달방안 : 유치기업 이전 계획에 맞춰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전액시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별지 서식】(제2면)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금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재원 조달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지방세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 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서 인정하는 것

5.~9의2. (생략)

②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 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 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 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② ~ ⑮ (생략)

3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시행 2023. 5. 17.] [경기도조례 제7639호, 2023. 5. 17., 일부개정]

제1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라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참고사항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시·군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1	고양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과천시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3	광명시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군포시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5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6	부천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7	수원시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8	시흥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9	안양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0	의왕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11	의정부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리·성남 : 기업유치 관련 조례 없음. 성남의 경우 4차 미래산업별(게임, 바이오헬스, e스포츠, 자율주행)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존재(4차산업추진단)